

## » 고충민원이란?

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,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·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

## »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

### ✓ 신청기간

**원칙**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

**예외**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,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 기간(5년) 경과 90일 전까지

### ✓ 처리기간

- 접수한 날부터 14일(초일 산입, 공휴일·토요일은 불산입)
- 1회 연장 가능,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

## » 권리보호요청이란?

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,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

### ✓ 신청기간

-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

### ✓ 처리기간

**원칙** 7일 이내 처리(초일은 산입, 공휴일·토요일은 불산입)

**예외** 14일(사실 확인·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·법령 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)

##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등)가 궁금하시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!

 경상남도 211-2515	 창원시 225-2308	 진주시 749-8276
 통영시 650-3242	 사천시 831-2228	 김해시 330-0813
 밀양시 359-5818	 거제시 639-3186	 양산시 392-2122
 의령군 570-2731	 함안군 580-2063	 창녕군 530-1093
 고성군 670-2076	 남해군 860-3057	 하동군 880-2034
 산청군 970-6022	 함양군 960-4034	 거창군 940-3312
 합천군 930-3045		

###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법

납세자 민원 신청 » 납세자보호관 » 검토조치

### 문의사항

경상남도 법무담당관 T. 055-211-2515



활기찬 경남 **행복한 도민**

지방세 고충해결·납세자 권리보호

#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

에게 요청하세요!



##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?

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.

##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

1.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
2.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
3.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
4. 과세자료 열람·제출 요구 및 질문·조사권

## 지방세 주요감면제도 안내

우리 도의 주요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입니다. 감면 규정, 추정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·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생애최초 취득 주택	<b>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(지특법 제36조의3)</b>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(부부합산소득 무관)
 다자녀 양육자 차량	<b>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(지특법 제22조의2)</b>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·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(일부차량 140만원 한도)
 장애인 차량	<b>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(지특법 제17조)</b>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·등록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각각 면제
 자경농민 농지	<b>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(지특법 제6조)</b>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
 수용 토지 감면	<b>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(지특법 제73조)</b>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,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중전가액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)
 산업단지 입주기업	<b>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(지특법 제78조 제4항)</b>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75%, 재산세 75%(5년간) 경감
 창업 중소기업	<b>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(지특법 제58조의3)</b>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 이내 창업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% 경감, 재산세는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경감
 전자송달, 자동납부 공제	<b>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(지특법 제92조의2)</b>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1장당 250부터 1천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공제

##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

제목	납부방법	납부기간·납부기한
취득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(상속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)</li> <li>○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사부과</li> </ul>
주민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균등분</b> 보통징수 (납기 8. 16. - 8. 31.)</li> <li>○ <b>재산분</b> 신고납부 (신고납부기간 7. 1. - 7. 31.)</li> <li>○ <b>종업원분</b>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</li> </ul>
자동차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정기분</b> 제1기분 (6. 16. - 6. 30.)</li> <li>○ <b>수시분</b>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 누락자 1월 / 7월 수시부과</li> <li>○ 연세액 일시납부(1, 3, 6, 9월) / 분할납부(3, 6, 9, 12월)</li> </ul>
지방소득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법인분</b>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</li> <li>○ <b>양도·종합소득분</b>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(다음년도 5. 1. - 5. 31.)</li> <li>○ <b>특별징수</b>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</li> </ul>
지역자원시설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특정자원분(조례)</b>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</li> <li>○ <b>특정자원분(조례)</b> 매년 7월(16 - 31), 9월(16 - 30)</li> <li>○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사부과</li> </ul>
등록면허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년 1. 16. - 1. 31. 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)</li> <li>○ 등기·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</li> <li>○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(면허분) 납부</li> </ul>
재산세	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정기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</li> <li>•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</li> </ul> </li> <li>○ 7월 (16 - 31)</li> <li>○ 9월 (16 - 3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</li> <li>•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</li> </ul> </li> <li>○ <b>수시분</b>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사부과</li> </ul>
지방교육세	신고납부 보통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득세·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</li> <li>○ 주민세(균등분)·재산세·자동차세(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) 납부기한까지</li> </ul>